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1
----------	------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중구 문화의전당 건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업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사업소) : 문화의전당

나. 분장사무 조정

1) 행정지원국장

가) 총무과 사무에 “정보관리” 추가, “통신” 삭제

나) 자치행정과 사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통신” 추가,
“녹색정책, 자전거, 정보관리” 삭제

다) 평생교육과 사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삭제

2) 복지경제국장

가) 사회복지과 사무에 “청소년” 추가

나) 환경위생과 사무에 “녹색성장” 추가

3) 건설도시국장 : 안전건설과 사무에 “자전거” 추가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규제사무 심의 및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작성제외

다. 입법예고 : 2014. 2. 24. ~ 2014. 3. 3.(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통신”을 “정보관리”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 민간협력, 민방위, 녹색정책, 자전거, 정보관리”를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민간협력, 민방위, 통신”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제4호 중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청소년”을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여성복지”를 “여성청소년”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제5호 중 “공중위생, 식품위생”을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로관리”를 “도로관리 및 자전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5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4장 및 같은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4장 문화의전당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문화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전당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관장) ① 문화의전당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 공연
2. 지역주민,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혁신도시 제10호 근린공원”을 “종가로 405”로 한다.

[별표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25 (남외동)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별표2]

문화의 전당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생략) 1. 서무, 인사, 회계, 재산관리, 통신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민간협력, 민방위, 녹색정책, 자전거,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생략) 4.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5. ~ 6. (생략)</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정보관리 ----- ----- 2.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민간 협력, 민방위, 통신 ----- 3. (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 5.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노인정책, 여성복지 및 외국인 정책, 보육, 장애인복지,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공중위생, 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p>	<p>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여성청소년 및 외국인 정책, ----- ----- 3. ~ 4. (현행과 같음) 5.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생략) 1. 안전정책 총괄 및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 등에 관한 사항 2.~ 7. (생략)</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도로관리 및 자전거, ----- ----- 2.~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p>	<p>제8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과 -----</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4장 동</p> <p>제11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1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p> <p>제1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장 문화의전당</p> <p>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문화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전당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p> <p>제12조(관장) ① 문화의전당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3조(소관사무)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 공연 2. 지역주민,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p> <p>제5장 (현행 제4장과 같음)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p> <p>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생략)</p> <p><신 설></p>	<p>[별표 1]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문화의 전당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783 792 1370 938"> <thead> <tr> <th>명칭</th> <th>위치</th> <th>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td> <td>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td> <td>울산광역시 중구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	울산광역시 중구일원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3월 5일 · 중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1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안번호 제1051호)
(2014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1) 중구 문화의전당 건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동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 2)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업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기구 신설(사업소) : 문화의전당
- 2) 분장사무 조정
 - 가) 행정지원국장
 - 총무과 사무에 “정보관리” 추가, “통신” 삭제
 - 자치행정과 사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통신” 추가, “녹색정책, 자전거, 정보관리” 삭제
 - 평생교육과 사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삭제
 - 나) 복지경제국장
 - 사회복지과 사무에 “청소년” 추가
 - 환경위생과 사무에 “녹색성장” 추가
 - 다) 건설도시국장 : 안전건설과 사무에 “자전거”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검토보고자 : 김규협 전문위원)

- 중구 문화의전당 건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업무부서 일원화 등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운동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기구 신설(사업소)로는 문화의전당이 신설되며
 - 분장사무 조정으로는
 -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 ▶ 총무과 사무에 “정보관리” 추가, “통신” 삭제
 - ▶ 자치행정과 사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통신” 추가, “녹색정책, 자전거, 정보관리” 삭제
 - ▶ 평생교육과 사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삭제
 - 복지경제국장 분장사무 중
 - ▶ 사회복지과 사무에 “청소년” 추가
 - ▶ 환경위생과 사무에 “녹색성장” 추가
 - 건설도시국장 분장 사무 중
 - ▶ 안전건설과 사무에 “자전거” 추가가 있습니다.
-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구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